

ご利用規則 Use regulations

ホテルの公共性と安全性を維持するため、当ホテルのお客様には宿泊約款第10条に基づき、下記の条項をご遠慮していただきます。

この規則に定められた事項をお守りいただけない場合、宿泊のご継続及び館内施設のご利用をお断りさせていただくこともあります。

●廊下及び客室内で暖房用、炊事用の火器及びアイロン等の持ち込みはご遠慮ください。

●ベッドの中など火災の原因となり易い場所での喫煙はご遠慮ください。

●ご訪問客とのお部屋でのご面会をご遠慮ください。

●次に掲げる組織、個人については、当ホテルのご宿泊及び館内諸施設のご利用をお断りします。

①暴力団、暴力団員、暴力団関係団体及びその関係者

②暴力団または暴力団員が事業活動を支配する法人その他の団体の関係者

③反社会的団体、反社会的団体員及びその関係者

④暴行、傷害、脅迫、恐喝、暴力的要求行為又は合理的な範囲を超える負担の要求及びこれに類する行為が認められる場合

⑤泥酔者等、他のお客様に著しく迷惑を及ぼす恐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

⑥ホテル利用規則の違反について、当ホテルより注意を受けて直ちにその行為を止めなかった者

(1) 前①から⑥に該当する場合は、その時点以降、一切のご利用をお断りさせていただきます。

伝染病等他のお客様に不快感をあたえたり、迷惑をおかけしたりするような疾病をおもちの方のご宿泊はお断り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す。

●館内及び客室内で声高、放歌又は喧騒な行為等で、他のお客様に不快感をあたえたり迷惑をかけることはご遠慮ください。

●廊下及び客室内に次のようなものを持ち込むことはご遠慮ください。

①動物、鳥類等の生物あるいはペット類。

②著しく多量の品物。

③著しく悪臭を発するもの。

④火薬や揮発油など発火或いは引火しやすいもの。

⑤適法に所持を許可されていない銃砲、刀剣類。

●廊下及び客室内で賭博や風紀・治安を乱すような行為、他のお客様に迷惑となったり不快感を与えるような行為はご遠慮ください。

●外来者を客室内に引入れたり、客室内の諸設備、諸物品などを使用させたりすることはご遠慮ください。

●館内の諸設備、諸物品を移動、持ち出し又はその目的以外の用途に使用することはご遠慮ください。

●ホテルの建築物や諸設備に異物を取り付けたり現状を変更するような加工をすることはご遠慮ください。

●ホテル内で他のお客様に広告物を配布したり物品を販売することはご遠慮ください。

●廊下やロビーなどに所持品を放置することはご遠慮ください。

●飲食物の出前はご遠慮ください。

To maintain the public nature and safety of the hotel, we request that our guests abide with the following items based on Article 10 of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Contracts.

If the items stipulated here are not complied with, in some cases guests will not be permitted to continue to stay at the hotel or to use hotel facilities.

● Please refrain from bringing combustibles for heating or cooking purposes or irons into hallways or guest rooms.

● Please refrain from smoking in areas susceptible to fire, such as in beds.

● Please refrain from having visitors in guest rooms.

●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re not permitted to stay at the hotel or use hotel facilities.

(a) An organized crime group, organized crime group member,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an organized crime group, or other related party

(b) A corporation or other organization whose business activity is controlled by an organized crime group or organized crime group member

(c) An antisocial organization, antisocial organization member, or related party

(d) An organization and individual that commit violence, assaults, threats, blackmail, violent demand; demand compensation beyond a reasonable scope; or that are deemed to have committed equivalent acts

(e) An individual deemed as likely to cause a considerable nuisance to other customers, such as extremely inebriated customer

(f) An individual who fails to immediately stop violation of regulations upon the request of the hotel

(1) If (a) through (d) above apply, the guest will not be permitted to use the hotel facilities from that point onward.

Guests with diseases such as communicable diseases that may cause discomfort or a disturbance for other guests may be prohibited from staying at the hotel in some cases.

● Please refrain from speaking in a loud voice, singling loudly, fighting, or other similar acts that may cause discomfort or a disturbance for other guests in the hotel and guest rooms.

● Please refrain from bringing the following items in hallways and guest rooms.

(1) Living things or pets such as animals and birds

(2) Extremely large quantities of items

(3) Items that emit extremely unpleasant odors

(4) Combustible or highly flammable items such as explosives or volatile oils

(5) Firearms or knives that are illegal to possess

● Please refrain from gambling, acts that disrupt public morals or security, or other acts that may cause discomfort or a disturbance for other guests in the hotel and guest rooms.

● Please refrain from inviting visitors into guest rooms or allowing them to use the facilities and objects inside guest rooms.

● Please refrain from moving, taking out, or using equipment and items in the hotel for purposes other than their intended purpose.

● Please refrain from attaching foreign objects to hotel structures and equipment or processing in a manner that changes their original condition.

● Please refrain from distributing advertisements or selling goods to other guests in the hotel.

● Please refrain from leaving personal possessions in locations such as the hallway or the lobby.

● Please refrain from using delivery services for food and beverages.

使用规则 이용규칙

为了维护宾馆的公共性和安全性,根据入住条款第10条本宾馆禁止顾客的以下行为。对于违反宾馆使用规则的顾客,本宾馆将终止提供住宿服务和馆内设施的使用。

- 禁止将取暖用、做饭用等加热器具以及电熨斗带入走廊或客房内。
- 禁止在床上或容易引起火灾的地方吸烟。
- 禁止在客人房间内进行会谈。
- 本宾馆谢绝以下组织和个人的入住以及馆内设施的使用。
 - ㉠暴力团,暴力团成员,和暴力团有关的团体以及相关人士
 - ㉡由暴力团或暴力团成员掌控的事业法人和其他团体的相关人士
 - ㉢反社会的团体,反社会团体成员及其相关人士
 - ㉣暴力,伤害,威胁,恐吓,等暴力行为或超出合理范畴的要求以及被认为类似行为发生的情况
 - ㉤醉酒者,有可能严重影响其他客人入住环境的人士
 - ㉥违反宾馆使用规则,在受到宾馆服务人员劝阻后仍未立即停止违反行为的人士
- (1)如属于以上㉠至㉥人士,禁止提供任何服务。

对于持有可能给其他客人带来不快感的传染病或其他疾病的人士,本宾馆谢绝入住。
- 宾馆和客房内禁止大音量,唱歌,喧哗等行为,请不要做出影响其他客人或给他人带来不快感的行为。
- 禁止将以下物品带入宾馆走廊和客房。
 - (1)动物,鸟类等生物或其他宠物类。
 - (2)明显大量的物品。
 - (3)散发剧烈恶臭的东西。
 - (4)火药和挥发油等易燃易爆物品。
 - (5)非法持有的枪支,刀剑类。
- 禁止在走廊过道以及客房里进行赌博以及违反治安法规的行为,禁止给他人带来麻烦或不快感的任何行为。
- 禁止让非入住人员进入房间使用客房内设备和物品。
- 禁止移动或带出宾馆内设备和物品以及其他用途。
- 禁止损坏宾馆建筑物和宾馆内设施或粘贴异物等改变原有外观的行为。
- 禁止在宾馆内向其他客人分发广告或销售物品。
- 禁止在宾馆走廊或大堂等公用场所放置私人物品。
- 宾馆内禁止叫外卖。

호텔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 호텔 고객님께서 숙박약관 제10조에 의거해 아래 조항을 상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에 정해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숙박을 계속하실 수 없거나 관내 시설 이용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복도 및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화기 및 다리미 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 침대 위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의 흡연은 삼가 주십시오.
- 방문객과 객실에서 면회하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다음과 같은 조직, 개인은 당 호텔의 숙박 및 관내 시설이용이 불가합니다.
 - (a) 폭력조직, 폭력조직원, 폭력조직 관계 단체 및 그 관계자
 - (b)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 단체 관계자
 - (c) 반사회적 단체, 반사회적 단체원 및 그 관계자
 - (d) 폭행, 상해, 협박, 공갈, 폭력적 요구행위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부담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 (e) 만취자 등, 다른 고객님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f) 호텔 이용규칙 위반에 관해, 당 호텔에서 주의를 받고 즉시 그 행위를 멈추지 않은 자
- (1)상기의 (a)부터 (d)에 해당될 경우, 그 시점부터 이용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전염병 등 다른 고객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의 숙박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관내 및 객실 내에서의 고성 방가 또는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다른 고객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복도 및 객실 내에 다음과 같은 물건의 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 (가)동물, 조류 등의 생물 내지는 애완동물류.
 - (나)명백히 양이 많은 물건.
 - (다)명백히 악취가 나는 물건.
 - (라)화약, 취발유 등 발화 및 인화성 물질.
 - (마)적법한 소지 허가가 없는 총포, 도검류.
- 복도 및 객실 내에서 도박이나 풍기·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다른 고객님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방문객을 객실 내에 들이거나 객실 내 설비,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관내 설비, 물품을 이동 및 반출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호텔 건축물이나 설비에 이물을 부착하거나 현 상태를 변경하는 등의 가공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호텔 내에서 다른 고객님에게 광고물을 배포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삼가해주시십시오.
- 복도나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하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음식물을 배달해서 드시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宿泊約款

(適用範囲)

第1条

当ホテルが宿泊客との間で締結する宿泊契約及びこれに関連する契約は、この約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ものとし、この約款に定めのない事項については、法令又は一般に確立された慣習によるものとします。

2.当ホテルが、法令及び慣習に反しない範囲で特約に応じた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特約が優先するものとします。

(宿泊契約の申込み)

第2条

当ホテルに宿泊契約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は、次の事項を当ホテルに申し出ていただきます。

- ① 宿泊者名
 - ② 宿泊日及び到着予定時刻
 - ③ 宿泊料金（原則として別表第1の基本宿泊料による。）
 - ④ その他当ホテルが必要と認める事項
- 2.宿泊客が宿泊中に前項第2号の宿泊日を超えて宿泊の継続を申し入れた場合、当ホテルは、その申し出がなされた時点で新たな宿泊契約の申込みがあったものとして処理します。

(宿泊契約の成立等)

第3条

宿泊契約は、当ホテルが前条の申込みを承諾したときに成立するものとします。ただし、当ホテルが承諾をし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

2.前項の規定により宿泊契約が成立したときは、宿泊期間の基本宿泊料を限度として当ホテルが定める申込金を、当ホテルが指定する日までに、お支払いいただきます。

3.申込金は、まず、宿泊客が最終的に支払うべき宿泊料金に充当し、第6条及び第19条の規定を適用する事態が生じたときは、違約金に次いで賠償金の順序で充当し、残額があれば、第12条の規定による料金の支払いの際に返還します。

4.第2項の申込金を同項の規定により当ホテルが指定した日までに支払いただけない場合は、宿泊契約はその効力を失うものとします。ただし、申込金の支払期日を指定するに当たり、当ホテルがその旨を宿泊客に告知した場合に限ります。

(申込金の支払いを要しないこととする特約)

第4条

前条第2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ホテルは、契約の成立後同項の申込金の支払いを要しないこととする特約に応じることがあります。

2.宿泊契約の申込みを承諾するに当たり、当ホテルが前条第2項の申込金の支払いを求めなかった場合及び当該申込金の支払期日を指定しなかった場合は、前項の特約に応じたものとして取り扱います。

(宿泊契約締結の拒否)

第5条

当ホテルは、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宿泊契約の締結に応じないことがあります。

- ① 宿泊の申込みが、この契約によらないとき。
- ② 満室により客室の余裕がないとき。
- ③ 偽りその他不正な手段により宿泊の申込みを受けた

とき。

- ④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次の④から⑥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
 - ④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3年法律第77号）第2条第2号に規定する暴力団（以下「暴力団」という。）、同条第2条第6号に規定する暴力団員（以下「暴力団員」という。）、暴力団準構成員又は暴力団関係者その他の反社会的勢力
 - ⑤ 暴力団又は暴力団員が事業活動を支配する法人その他の団体であるとき
 - ⑥ 法人でその役員のうちに暴力団員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 ⑤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宿泊に関し、法令の規定、公の秩序若しくは善良の風俗に反する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
- ⑥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伝染病である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とき。
- ⑦ 宿泊に関し暴力的要求行為が行われ、又は合理的な範囲を超える負担を求められたとき。
- ⑧ 天災、施設の故障、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り宿泊を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
- ⑨ 宿泊をしようとする者が、泥酔者等で、他の宿泊者または利用者に著しく迷惑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たとき、あるいは、宿泊客が他の宿泊者または利用者に著しく迷惑を及ぼす言動を行うものと認められるとき。

(宿泊客の契約解除権)

第6条

宿泊客は、当ホテルに申し出て、宿泊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ます。

2.当ホテルは、宿泊客がそ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り宿泊契約の全部又は一部を解除した場合(第3条第2項の規定により当ホテルが申込金の支払期日を指定してその支払いを求めた場合であって、その支払いより前に宿泊客が宿泊契約を解除したときを除きます。)、別表第2に掲げるところにより、違約金を申し受けます。ただし、当ホテルが第4条第2項の特約に応じ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特約に応じるに当たって、宿泊客が宿泊契約を解除したときの違約金支払い義務について、当ホテルが宿泊客に告知したときに限ります。

3.当ホテルは、宿泊客が連絡をしないで宿泊当日の午後10時（あらかじめ到着予定時刻が明示されている場合は、その時刻を2時間経過した時刻）になっても到着しないときは、その宿泊契約は宿泊客により解除されたものとみなし処理することがあります。

(当ホテル(館)の契約解除権)

第7条

当ホテル(館)は、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宿泊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あります。

- ① 宿泊客が宿泊に関し、法令の規定、公の秩序若しくは善良の風俗に反する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又は同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とき。
- ② 宿泊客が次の④から⑥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
 - ④ 暴力団、暴力団員、暴力団準構成員又は暴力団関係者その他の反社会的勢力
 - ⑤ 暴力団又は暴力団員が事業活動を支配する法人そ

他の団体であるとき

- ① 法人でその役員のうちに暴力団員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 ③ 当ホテルが、前項の規定に基づいて宿泊契約を解除したときは、宿泊客が未だ提供を受けていない宿泊等の料金はいただきません。
- ④ 宿泊客が、伝染病である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とき。
- ⑤ 天災等不可抗力に起因する事由により宿泊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
- ⑥ 寝室での寝タバコ、消防用設備等に対するいたづら、その他当ホテルが定める利用規則の禁止事項（火災予防上必要なものに限る。）に従わないとき。
- ⑦ 宿泊に関し暴力的要求行為が行われ、又は合理的な範囲を超える負担を求められたとき。
- ⑧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泥酔者等他の宿泊者に著しく迷惑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あるいは宿泊客が他の宿泊者に著しく迷惑を及ぼす言動をしたとき。

(宿泊の登録)

第8条

宿泊客は、宿泊日当日、当ホテルのフロントにおいて、次の事項を登録していただきます。

- ① 宿泊客の氏名、年齢、性別、住所及び職業
- ② 外国人にあつては、国籍、旅券番号、入国地及び入国年月日
- ③ 出発日及び出発予定時刻
- ④ その他当ホテルが必要と認める事項

2.宿泊客が第12条の料金の支払いを、宿泊券、クレジットカード等通貨に代わり得る方法により行お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前項の登録時にそれらを呈示していただきます。

(客室の使用時間)

第9条

宿泊客が当ホテルの客室を使用できる時間は、午後15時から翌朝11時までとします。ただし、連続して宿泊する場合には、到着日及び出発日を除き、終日使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2.当ホテル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に定める時間外の客室の使用に応じることがあります。この場合には次に掲げる追加料金を申し受けます。

- ① 午後14時までは、1時間延長毎に1,000円（税込）
- ② 午後14時以降は、ご一泊分の客室料金

(利用規則の遵守)

第10条

宿泊客は、当ホテル内においては当ホテルが定めてホテル内に掲示した利用規則に従っていただきます。

(営業時間)

第11条

当ホテルの主な施設等の営業時間は次のとおりとし、その他の施設等の詳しい営業時間は備付けパンフレット、各所の掲示、客室内のサービスディレクトリー等で御案内いたします。

- ① フロント・キャッシャー等サービス時間/24時間営業
- 2.前項の時間は、必要やむを得ない場合には臨時に変更することがあります。その場合には、適当な方法をもってお知らせいたします。

宿泊約款

(料金の支払い)

第12条

宿泊者が支払うべき宿泊料金等の内訳及びその算定方法は、別表第1に掲げるところによります。

2.前項の宿泊料金等の支払いは、通貨（円）、宿泊券、クレジットカード等これに代わり得る方法により、宿泊客の出発の際又は当ホテルが請求した時、フロントにおいて行っていただきます。

3.当ホテルが宿泊客に客室を提供し、使用が可能になったのち、宿泊客が任意に宿泊しなかった場合においても、宿泊料金は申し受けず。

(当ホテルの責任)

第13条

当ホテルは、宿泊契約及びこれに関連する契約の履行に当たり、又はそれらの不履行により宿泊客に損害を与えたときは、その損害を賠償します。ただし、それが当ホテル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るもので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

2.当ホテルは、万一の火災等に対処するため、旅館賠償責任保険に加入しております。

(契約した客室の提供ができないときの取扱い)

第14条

当ホテルは、宿泊客に契約した客室を提供できないときは、宿泊客の了解を得て、できる限り同一の条件による他の宿泊施設をあっ旋するものとします。

2.当ホテル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他の宿泊施設のあっ旋ができないときは、違約金相当額の補償料を宿泊客に支払い、その補償料は損害賠償額に充当します。ただし、客室が提供できないことについて、当ホテル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がないときは、補償料を支払いません。

(寄託物等の取扱い)

第15条

宿泊客がフロントにお預けになった物品について、滅失、毀損等が生じたときは、それが不可抗力である場合を除き、当ホテルは、当ホテルの付保する保険約款に則り損害の賠償を致します。

2.宿泊客が、当ホテル内にお持込になった物品であってフロントにお預けにならなかったものについて滅失、毀損等が生じたときは、当ホテルは責任を負いかねます。ただし、当ホテルの過失により滅失、毀損等の損害が生じたときは、当ホテルは、当ホテルの付保する保険約款に則り損害を賠償致します。

(宿泊客の手荷物又は携帯品の保管)

第16条

宿泊客の手荷物が宿泊に先立って当ホテルに到着した場合は、その到着前に当ホテルが了解したときに限って責任をもって保管し、宿泊客がフロントにおいてチェックインする際お渡します。

2.宿泊客がチェックアウトしたのち、宿泊客の手荷物又は携帯品が当ホテルに置き忘れられていた場合において、原則として発見日を含めて一定期間保管し、最寄りの警察署に届けます。

3.前2項の場合における宿泊客の手荷物又は携帯品の保管についての当ホテルの責任は、第1項の場合にあっては前第1項の規定に、第2項の場合にあっては

前条第2項の規定に準じるものとします。

(室内貸金庫の利用)

第17条

当ホテルは、宿泊客が客室備え付けの貸金庫に格納する物について保管を約するものではなく、格納物の滅失、毀損等についての責任は負いかねます。

2.貸金庫には、爆発物等の危険物、動物、その他当ホテル又は第三者に損害を及ぼすおそれのある物を格納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3.貸金庫の利用期間は、宿泊客のチェックイン時からチェックアウト時までとします。

4.当ホテルは、貸金庫の利用期間外に格納物が残置されている場合には、開庫のうえ、前条第2項に準じて保管及び届出を行ないます。この場合の保管についての当ホテルの責任は、第15条第2項の規定に準じるものとします。

5.当ホテルは、法令の定めにより貸金庫の開庫を求められたとき、格納品が当ホテル又は第三者に損害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その他開庫の必要性が認められる場合には、貸金庫の利用期間内であっても、貸金庫の開庫その他当ホテルが必要と認める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ます。なお、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当ホテルは責任を負いかねます。

(駐車場の責任)

第18条

宿泊客が当ホテルの駐車場をご利用になる場合、車輛のキーの寄託の如何にかかわらず、当ホテルは場所をお貸しするものであって、車輛の管理責任まで負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ただし、駐車場の管理に当たり当ホテルの故意又は過失によって損害を与えたときは、その賠償の責めに任じます。

(宿泊客の責任)

第19条

宿泊客の故意又は過失により当ホテルが損害を被ったときは、当該宿泊客は当ホテルに対し、その損害を賠償していただきます。

(免責事項)

第20条

私共のホテル内からのコンピューター通信のご利用にあたりましては、お客様ご自身の責任にて行うものといたします。コンピューター通信のご利用中にシステム障害その他の理由によりサービスが中断し、その結果利用者がいかなる損害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も、当ホテルは一切の責任を負いません。また、コンピューター通信のご利用に当社が不適切と判断した行為により、当ホテルおよび第三者に損害が生じた場合、その損害を賠償していただきます。

(準拠する言語)

第21条

この約款が日本語以外の言語で作成された場合、その

別表第1 宿泊料金の内訳（第2条第1項及び第12条第1項関係）

宿泊客が支払うべき総額	宿泊料金	①客室料金	②サービス料（①×0%）
	税金	③飲食料及びその他の利用料金	④サービス料（③×0%）
		④消費税	
		⑤宿泊税（課税対象自治体の場合）	

備考 税法・条例などが改正された場合は、その改正された規定によるものとします。

別表第2 違約金（第6条第2項関係）

契約解除を受けた日		契約申込人数				
		不泊	当日	前日	9日前	20日前
一般	14名まで	100%	100%	20%	—	—
	15名～99名まで	100%	100%	20%	10%	—
団体	100名以上	100%	100%	80%	20%	10%

- (注) 1. %は客室料金に対する違約金の比率です。
2. 契約日数が短縮した場合は、その短縮日数にかかわらず、1日分（初日）の違約金を収受します。
3. 団体客（15名以上）の一部について契約の解除があった場合、宿泊の10日前（その日より後に申込みをお引き受けした場合にはそのお引き受けした日）における宿泊人数の10%（端数が出た場合には切り上げる。）にあたる人数については、違約金はいただきません。

住宿条款

(适用范围)

第1条

本宾馆与顾客之间签署的住宿协议以及与此相关的协议应根据本条款规定的内容。本条款中未尽事宜，应依据相关法令或者已确定的习惯执行。

2. 本宾馆在不违反相关法律及惯例使用范围的前提下制定特别条款时，则不受限于前项规定，可优先执行该特别条款。

(住宿协议的申请)

第2条

本宾馆预约住宿的顾客，应向本宾馆提交以下事项。

(1) 住宿者姓名

(2) 入住日期及预计到达时间

(3) 住宿费(原则上根据 附表1中揭示的基本住宿费)

(4) 宾馆需要确认的其他事项

2. 前项第2款所述的入住期满后，如顾客申请延长住宿日期，本宾馆将依据提交的申请办理新的住宿协议。

(住宿协议的成立等相关事项)

第3条

经本宾馆认可后，前事项中预约的住宿协议即成立。但是，如未经宾馆方认可，则不在此限

2. 依据前项规定成立住宿协议后，即应在指定日期前向本宾馆支付以住宿期间的的基本住宿费为限额的本宾馆指定订金。

3. 订金一般用于结算顾客应支付的最终住宿费，当发生第6条及第19条规定的相关事态时，将依次作为违约金及赔偿金，如尚有余额，则将在执行第12条规定的费用支付时予以退还。

4. 第2项所述订金如依据同项规定而未能于本宾馆指定日期前予以支付时，则该住宿协议视为无效。但仅限于本宾馆告知顾客订金支付日期时。

(无须支付订金的特别条款)

第4条

针对协议成立后无须支付第2项所述订金的情况，本宾馆制定了对应特别条款，可忽略第2项所述规定。

2. 认可住宿协议申请后，如本宾馆未提出前条第2项所述的订金支付要求、或未指定订金支付日期，则可依据前项中的特别条款予以办理。

(拒绝签署住宿协议)

第5条

发生以下情况时，本店将不予签署住宿协议。

(1) 未依据本条款预约住宿时。

(2) 客房已满无法安排入住时。

(3) 以伪造或其他不正当手段申请住宿时。

(4) 预约入住的顾客被界定为以下任意一项时。

①根据防止暴力团非法行为的法律(平成3年法律第77条)第2条第2项所规定的暴力团(以下简称暴力团)，同法律第2条第6项所规定的暴力团成员(以下简称暴力团)，暴力团体准构成成员或相关人员以及其他反社会势力。

②由暴力团体或暴力团成员支配从事业务活动

的预约入住法人顾客或其他团体。

③公司董事中有暴力团体成员身份的预约入住法人顾客。

(5) 入住者被认定在住宿期间将会进行违反相关法律规定、公共秩序或良好风俗的活动时。

(6) 预约入住的顾客明确患有传染病。

(7) 以暴力行为要求入住或对住宿相关事宜提出的要求超出合理范围时。

(8) 发生天灾、设施故障、或其他不可抗力因素导致无法入住时。

(9) 申请住宿者深度醉酒或其行为举动被认为有可能严重干扰其他顾客正常住宿的预约入住顾客。

(顾客的协议解除权)

第6条

经向本宾馆提出申请后，顾客可解除住宿协议。

2. 顾客出于私人原因而解除全部或部分协议时(依据第3条第2项规定，宾馆指定订金支付日期并要求付款后，顾客未予支付即已解除住宿协议时除外。)，应根据附表2所示支付违约金。取消顾客解除协议相关违约金的情况，仅适用于本宾馆第4条第2项所述特别条款预先告知住宿的顾客后。

3. 预定入住的当天下午10点后(预先告知到达时间而超过2小时以上)，如顾客仍未到达本宾馆且未与本宾馆取得联系，则本宾馆将视作顾客已解除协议，并办理相关事宜。

(酒店的协议解除权)

第7条

发生下列情况时，本宾馆可解除住宿协议。

(1) 被认定在住宿期间将会进行违反相关法律规定、公共秩序或良好风俗的活动时，抑或被认定已实施上述行为时。

(2) 符合以下任意一项时。

①暴力团，暴力团成员，暴力团准构成人员以及暴力团体相关人士等反社会势力者。

②指使暴力团体或暴力团体成员从事业务活动的法人顾客或其他团体。

③公司董事中有暴力团体成员身份的预约入住法人顾客。

(3) 本宾馆根据以上规定解除和顾客的住宿协议时，将不收取顾客未住宿部分的费用。

(4) 预约入住的顾客明确患有传染病。

(5) 发生天灾、设施故障、或其他不可抗力因素导致无法入住时。

(6) 在床上吸烟、摆弄消防设备、以及未遵守本宾馆规定的其他使用规则(预防火灾的必要事项)时。

(7) 以暴力行为要求入住或对住宿相关事宜提出的要求超出合理范围时。

(8) 申请住宿者深度醉酒或其行为举动被认为有可能严重干扰其他顾客正常住宿的预约入住顾客。

(住宿登记)

第8条

顾客入住当天，应在本宾馆前台登记以下事项。

(1) 入住顾客姓名、年龄、性别、住址及职业

(2) 外国人应登记国籍、护照号码、入境地点及入境年月日

(3) 出发日及预计出发时间

(4) 本宾馆规定的其他事项

2. 顾客如使用旅行支票、住宿券、信用卡等方式支付第12条规定的费用，应在登记时事先予以出示。

(客房的使用时间)

第9条

顾客可使用本宾馆的时间从到达日的下午3点至次日上午11点。但如为连续住宿，则除却到达日及出发日外可整天使用。

2. 除上述规定外，本宾馆允许顾客于前项规定外的时间使用客房。但需要收取追加费用。

(1) 每天下午2点之前，每延长1小时，加收1,500日元(含税)

(2) 超过每天下午2点，加收一天的房费

(遵守使用规则)

第10条

顾客在宾馆住宿期间，应遵守本宾馆规定并于宾馆内公布的使用规则。

(营业时间)

第11条

本宾馆主要设施等场所的营业时间如下所示，其他设施的详细营业时间将在配发的指南手册、宾馆内公告、客房内的服务项目目录中予以介绍。

(1) 前台服务时间 24小时

2. 前项的时间处于特殊需要或不得已的情况下会有临时变更。届时会及时通知顾客。

(支付费用)

第12条

顾客应支付的住宿费用明细，如附表1中所示。

2. 出发离开或本宾馆要求支付前项所述住宿费时，顾客可采用日元现金或住宿券、信用卡等方式于宾馆前台进行支付。

3. 本宾馆已为顾客安排客房且可以入住时，如顾客未行住宿，将按照收取住宿费

(酒店责任)

第13条

本宾馆履行住宿协议及相关协议的过程中或由于未履行协议而造成顾客损失时，本宾馆予以赔偿。但是，如该损失不属于本宾馆责任范围内，则不予赔偿。

2. 为应对意外火灾等突发事件，本宾馆已加入宾馆赔偿责任保险。

(无法提供已定客房时的处理办法)

第14条

本宾馆与顾客签订协议后而无法提供客房时，应取得顾客谅解，并安排尽可能相同条件的其他住宿服务设施。

2. 如本宾馆无法安排其他住宿服务设施时，应向顾客支付与违约金等额的赔偿金，作为损失补偿额。但是，并非本宾馆原因而导致无法提供客房时，则不予支付

住宿条款

赔偿金。

（寄存物品的管理）

第15条

顾客寄存在前台的物品或现金及贵重物品发生丢失或损毁等损失时，除不可抗力因素外，本宾馆将予以赔偿。

2. 顾客未在前台寄存而带入本宾馆的物品、现金及贵重物品发生损坏、损失时，本宾馆将不承担责任。如由于本宾馆过失造成顾客物品的损坏和损失，本宾馆将依据加入保险的相应条款给予赔偿。

（顾客行李或随身物品的保管）

第16条

顾客行李提前到达本宾馆时，如到达前已告知本宾馆，则将由本宾馆负责保管，并在顾客在前台办理入住登记时予以交还。

2. 顾客办理退房手续后，如将行李或随身物品遗忘在前台，本宾馆将从发现当天起予以一定期限的保管，过后将递交最近的警察署。

3. 本宾馆保管前2项中所述的顾客行李或随身物品，如符合第1项，将依据前条第1项规定处理；如符合上一项，则依据前条第2项规定处理。

（客房保险箱的使用）

第17条

本宾馆对客人在各自客房保险箱内保管的物品不做任何保障的承诺。对客人保管的物品的丢失，损坏等结果不承担任何责任。

2. 保险箱内禁止存放爆炸物等危险品，动物以及有可能对本宾馆或他人带来损害的物品。

3. 顾客的保险箱使用时间限定为从入住起到退房为止。

4. 对于超过本宾馆保险箱使用限制时间后仍遗留在保险箱内的物品，本宾馆将根据以上第2项实施开箱并保管遗留物品。其间本宾馆将根据第15条第2项规定承担保管责任。

5. 本宾馆根据法令要求打开保险箱时，保存物品被认为有可能给本宾馆或他人带来损害时，以及其他具有打开保险箱的合理理由时，即使是在顾客的保险箱使用期限内，本宾馆也有权打开保险箱或采取其他必要措施。同时对由此可能产生的损失本宾馆不承担任何责任。

（停车场相关责任）

第18条

顾客使用本宾馆停车场时，不论是否寄存汽车钥匙，均属于租用本宾馆场地，本宾馆不承担车辆管理责任。但是，在管理停车场过程中，由于本宾馆故意或过失造成损失时，应承担赔偿责任。

（住宿顾客的相关责任）

第19条

由于顾客的故意或过失行为造成的损失时，应向本宾馆赔偿损失。

（免责事项）

第20条

利用本宾馆的计算机网络，由入住客人自行负责。入住客人在使用计算机网络中由于系统故障及其他理由而服务中断，其结果使用者受到的所有损失，本宾馆不承担任何责任。同时使用计算机时，本宾馆判断为不适宜的行为，并对本宾馆及第三者造成损失时，将索取赔偿。

（使用语言）

第21条

以日语以外的文字表述的本条款时，内容如与日语条款内容发生差异，请以日语条款内容为准。

附表1 房价表（第2条第1项以及第12条第1项关系）

客人应支付的总金额	住宿费	①房费	②服务费（①×0%）
		③食品饮料以及其他服务的使用费	④服务费（③×0%）
	税金	(1) 消费税	(2) 住宿费（属于课税对象自治体时）

备注 税法・条例等修订时，遵照其修订后的规定执行。

附表2 违约金（第6条第2项关系）

取消协议时间		预约人数				
		未入住	入住当天	入住前一天	入住9天前	入住20天前
个人	14人为止	100%	100%	20%	—	—
	15人~99人为止	100%	100%	20%	10%	—
团体	100人以上	100%	100%	80%	20%	10%

（备注）1 %表示针对基本住宿费的违约金收取比例

2 如果缩短预约天数，无论缩短多少天，都将收取1天（第一天）的违约金。

3 团体客（15人以上）中的部分顾客解除协议时，如解除协议人数未超过入住10天前（如受理申请之日在入住日10天前之后，则为受理日当天）的10%（非整数时向上进为整数），则无需支付违约金。

숙박약관

(적용범위)

제1조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한 것에 따르며,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내지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기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특약을 우선합니다.

(숙박계약 신청)

제2조

당 호텔에 숙박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를 따른다.)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는 숙박 연장을 요청할 경우, 당 호텔은 그 요청을 받은 시점에서 새로이 숙박계약이 신청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 성립 등)

제3조

숙박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음을 증명했을 시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2 전항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되면, 숙박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숙박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시는 위약금에 이어서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 당 호텔이 (이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

제4조

전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계약 신청을 승낙하는데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

(2) 만살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확한 수단으로 숙박 신청을 받았을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가~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폭력조직(이하 '폭력조직'이라 함), 동조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조직원(이하 '폭력조직원'이라 함), 폭력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조직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 단체인 경우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해 법령 규정, 공공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7)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행위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할 경우.

(8) 천재지변, 시설 고장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9)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상태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자 또는 이용자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지는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 또는 이용자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치는 언행을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숙박객은 당 호텔에 요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 당 호텔이 신청금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서 열거한 대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2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하는데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시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10시 (사전에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된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에도 도착하지 않을 시,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관)의 계약해제권)

제7조

당 호텔(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숙박객이 다음의 가~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조직, 폭력조직원, 폭력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조직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 단체인 경우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3) 당 호텔이 전항 규정에 의거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숙박객이 전염병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6) 침실에 누운 채 흡연을 하거나, 소방용 설비 등에 장난을 치거나, 그 외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 금지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경우.

(7)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행위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할 경우.

(8)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상태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자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지는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경우.

(숙박 등록)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 주십시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예정시각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화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객실 사용시간)

제9조

숙박객이 당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5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이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음에 열거한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1) 오후 14시까지는 1시간 연장마다 1,000엔(세금 포함)

(2) 오후 14시 이후는 1박치 객실요금

(이용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한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11조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구비된 팸플릿, 각종 게시물, 객실 내 서비스 디렉토리 등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 프런트·캐서 등 서비스 시간 / 24시간 영업

2 전항의 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박약관

(요금 지불)

제12조

숙박자가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열거된 것을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엔),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숙박객이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 시에 프런트에서 지불해주시시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에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3조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또는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 제공이 안될 경우의 취급)

제14조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숙박객의 양해를 구하여 가능한 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2 당 호텔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을 숙박객에게 지불하며, 그 보상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 제공이 안되는 것과 관련하여 당 호텔에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는 보상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위탁물 등 취급)

제15조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에 관해 멸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이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당 호텔이 체결한 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건에 관해 멸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 호텔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당 호텔이 체결한 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하기 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수하물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내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인한 후에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겨진 경우, 원칙적으로 발견일을 포함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전2항의 경우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는 전 제1항의 규정에 준거하며, 제2항의 경우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실내 대여금고 이용)

제17조

당 호텔은 숙박객이 객실에 구비된 대여금고에 수납하는 물건에 관해 보관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며, 보관물의 분실 및 훼손 등에 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 대여금고에는 폭발물 등의 위험물, 동물, 기타 당 호텔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수납하실 수 없습니다.

3 대여금고 이용 기간은 숙박객이 체크인했을 때부터 체크아웃할 때까지입니다.

4 당 호텔은 대여금고 이용 기간 외에 보관물이 남겨진 경우, 금고를 열어 전조 제2항에 준하여 보관 및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5 당 호텔은 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의거해 대여금고를 열도록 요구받은 경우, 보관품이 당 호텔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금고를 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금고 이용 기간 내라 하더라도 대여금고를 열거나,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차사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이 당 호텔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량 열쇠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드리는 것일 뿐,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그 배상 책임에 임합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9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면책사항)

제20조

자희 호텔 내에 있는 컴퓨터 통신 이용에 대해서는 고객님 자신의 책임 하에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이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당 호텔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준거 언어)

제21조

이 약관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그 언어의 약관과 일본어 약관 간에 불일치 또는 상이한 점이 있을 시는 모두 일본어 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①객실요금	②서비스료 (①×0%)
		③음식료 및 기타 이용요금	④서비스료 (③×0%)
	세 금	가 소비세 나 숙박세(과세대상 지자체의 경우)	

비고 세법·조례 등이 개정될 경우, 새로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계약해제를 통보 받은 날		계약신청 인원수				
		불박	당일	전날	9일전	20일전
일반	14명까지	100%	100%	20%	—	—
	15명~99명까지	100%	100%	20%	10%	—
단체	100명 이상	100%	100%	80%	20%	10%

- (주) 1 %는 객실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 단축 일수와 상관없이 1일치(첫날) 위약금을 받습니다.
 3 단체객(15명 이상) 중 일부의 계약해제가 발생할 경우 숙박 10일전(이날 이후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의 숙박인원수의 10%(소수점 단위일 경우 반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